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연구

정 재 완*

-
- I. 서 론
 - II. 원산지표시관련 국내외 법규 및 벌칙
 - III.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및 단속실적
 - IV.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 V. 결 론

주제어 :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표시, 수입자, 원산지표시위반

I. 서 론

원산지란 해당 상품이 생산된 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한다. 원산지는 농수산물이나 광산물과 같은 1차 상품의 경우는 어디에서 생산되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지만 공산품과 같이 2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가공이 이루어질

*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때 어느 곳을 원산지로 볼 것인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원산지는 특혜관세의 적용여부, 수입제한 등 무역의 관리, 원산지의 표시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개방경제하에서 원산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기업의 투자와 생산, 무역, 물류, 판매 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각국은 이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¹⁾ 원산지의 여러 기능중 원산지표시는 특정상품에 대해 결정된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면 이는 소비자의 구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²⁾에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동일한 상표의 동일 제품이라 할지라도 원산지가 다를 경우 동일한 가격을 지불하려는 의사를 갖지 않는다. 이는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것³⁾으로 원산지가 상품의 판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원산지에 관한 정보는 거래되는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으로 소비자에게 전달된다. 글로벌화한 상표이거나 글로벌기업인 경우 직접투자나 라이선싱 등을 통해 다양한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기업 이름이나 브랜드로서 원산지를 파악할 경우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만⁴⁾ 상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정확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구매결정에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들은 단순히 상품자체에 대한 호의에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국가가 어디인지를 보고 구매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는 순수한 원산지효과라 할 수 있다.⁵⁾ 선행연구에 따르면 국가에 대한 긍정적인(혹은 부정적) 인식이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가에 좀 더 긍정적인(혹은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소

1) 세계 많은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에는 다양한 기준들을 두고 있는 것이나, WTO의 통일원산지규정 제정과 관련된 협상이 당초 시작할 때 3년의 목표시한을 설정했음에도 15년 이상 타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2) Klein (2002), Klein, et. al.(1998), Heslop and Papadopoulos(1992), Johansson and Nebenzahl(1986), Nebenzahl and Jaffe(1993), Seaton and Laskey(1999)

3) Papadopoulos and Heslop(2002, 2003), Al-sulati and Baker(1998), Baughn and Yaprak(1993), Bilkey and Nes(1982), Javalgi, et. al.(2001), Liefeld(1993), Ozsomer and Cavusgil(1991), Peterson and Jolibert(1995), Pharr(2005), Srinivasan and Jain(2003), Verlegh and Steenkamp(1999) 등 전체적으로 약 30여편의 논문이 확인된다.

4) Han and Terpstra(1988), Haubl(1996), Johansson and Nebenzahl(1986)

5) Chaiken(1980), Maheswaran and Chaiken(1991), Maheswaran et. al.(1992), Petty and Cacioppo(1979), Gurhan-Canli and Maheswaran(1998)

비자들이 제품의 성격이나 성능에 의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합리적인 선택한다고 믿어왔으나 일본과 중국제품의 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 외국제품을 구매할 때 상대국에 대한 감정이나 정서가 상품구매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만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원산지정보가 제공 되었을 때 상표 및 제품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르는 구매결정은 특히 자기민족중심적인 소비자의 경우에 외국제품에 대한 원산지정보가 자국제품이라고 주어진 경우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⁶⁾ 원산지에 관한 지금까지의 국내외 연구는 주로 원산지결정과 관련된 것이거나, 아니면 원산지표시가 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루어졌고, 그 외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단속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연구가 중심이 되었다.⁷⁾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상품에 표시된 원산지가 그릇된 것일 때 그 상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의 생산업체 및 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는가를 실태조사를 기초로 추정하려는 데 있다. 연구는 원산지표시 관련 법규와 표시위반 물품에 대한 대응시스템을 검토하고, 최근 4년간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물품에 대한 단속실태를 분석한 다음 원산지표시 위반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4개 품목을 정해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Ⅱ. 원산지표시관련 국내의 법규 및 벌칙

1. 원산지표시 관련 국내의 법규

무역상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를 규율하는 국제규범은 사실상 세계무역기구(WTO)의 GATT⁸⁾ 및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⁹⁾이 유일하다.¹⁰⁾ GATT 제9

6) Heslop and Papadopoulos(1993), Jaffe and Nebenzahl(2006), Obermiller and Spannenberg(1989), Sharma, et. al.(1995), Shimp and Sharma (1987)

7) 정재완(2008), 정재완 외 2인(2009), 오원석 외 4인(2009), 박광서 외 2인(2009), 박광서·오원석(2009), 박광서(2010), 정재완(2010) 등의 연구가 있다.

8)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Article IX

조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하여 체약국은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을 제정 또는 실시함에 있어 허위의 표시 또는 오해의 우려가 있는 표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배려를 하는 동시에 동 법규가 수출국의 상업과 산업에 미칠 곤란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됨을 인정하도록 규정하였을 뿐 표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두고 있지 않다. GATT 제1조는 최혜국대우의 원칙(MFN)을, 제3조는 국민대우(NT)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9조의 원산지표시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 원칙은 규정하고 있지만 내국민대우원칙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일찍부터 국제사회에서는 GATT 제9조의 원산지표시는 제3조의 내국민대우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왔다.¹¹⁾ GATT 제9조는 1947년 GATT 출범시 부터 존재했던 조항이나 그 후 원산지규정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됨에 따라 우루과이 라운드에서는 ‘조화된 원산지규정(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을 목표로 협상이 진행되었지만 라운드가 종료될 때까지 합의된 원산지규정을 도출하지 못하였다. 대신 원산지규정의 적용범위를 비특혜부문¹²⁾에 한정한다는 것과 조화된 원산지규정에서는 원산지의 판정을 HS 분류를 기초로 한 세번변경기준을 우선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원산지규정 조화작업을 우루과이 라운드가 종결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하여 시작후 3년 이내에 종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여 원산지협정으로서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WTO 출범직후인 1995년 7월부터 WCO 및 WTO에서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는데, 당초 계획과

9)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제정된 이 협정은 9개조와 2개의 부속서로 구성된다.

10) WCO의 세관절차의 조화에 관한 협약(일명 교토협약)에도 원산지에 관한 규정이 있으나 원산지결정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원산지표시에 관한 규정은 두지 않았다. 이 협약은 2006년 3월 우리나라에서 정식 조약으로 발효되었다. Protocol of Amendment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ures, Specific Annex K Chapter 1

11) Jackson, John H., World Trade and the Law of GATT, The Michie Company, 1969, p.460

12) 원산지규정은 통상 특혜원산지규정과 비특혜원산지규정으로 구분된다. 특혜원산지규정은 FTA 등 지역경제통합이나 특혜무역협정(PTA),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등에 의한 관세상의 특혜부여를 위한 원산지의 구분을 의미하며, 비특혜원산지규정은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나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표시와 같은 특혜의 부여가 아닌 다른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원산지의 구분을 의미한다.

달리 2011년 3월 현재까지도 완전한 타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통일 원산지규정에서도 원산지결정 방법이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기본원칙 등이 협상의 대상일 뿐¹³⁾ 구체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등은 논의대상이 아니다. 이는 각국이 법률로서 규율할 사항이라 본다.

무역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원산지표시 관련규정은 대외무역법,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관세법,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에 있다. 이 가운데 대외무역법이 원산지표시에 관한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이 논문에서 ‘불공정무역행위조사법’이라 함)에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출입행위라는 불공정무역 행위의 규제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및 구제에 관해, 관세법에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의 통관 및 유통이력관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통관 및 환적의 제한, 보세구역반입명령 등과 시정조치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남북간 교역되는 물품의 원산지판정 및 원산지표시에 관해 각각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¹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령¹⁵⁾은 수출입되는 농수산물뿐 아니라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각종 규율 내용을 규정하였다. 이 법령은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요령)로 구성된다.

13) Agreement on Rules of Origin, Article 2 (b), 2 (d), 2 (f), 3(c), 3(e) 등에 규정된 무역장벽화의 금지, 무차별의 원칙, 명료성의 원칙, 구제절차 등의 주요원칙을 의미한다.

14)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는 원산지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남북교역물품과 관련한 원칙적 내용만 규정하였다. 이 법령에 근거하여 남북교역물품에 대해 원산지규정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것은 관세청장이 고시한 ‘남북교역물품 통관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10-046호, 2010.6.10, 일부개정 시행)다. 이 고시에는 남북교역물품의 원산지표시와 관련해 인쇄된 선전문구 등에 대한 삭제 규정 같은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외무역법에 규정된 표시와 관련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15) 법률 제10022호(2010.2.4, 제정, 2010.8.5. 시행), 시행령(대통령령 제22332호, 2010.8.11, 제정 및 시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10-82호, 2010.8.31.)

2. 원산지표시위반에 대한 벌칙

대외무역법은 제33조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원산지표시대상품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¹⁶⁾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¹⁷⁾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면서 구체적인 원산지의 표시방법·확인,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¹⁷⁾ 아울러 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부적정한 표시뿐 아니라 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②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③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와 과징금부과, 징역이나 벌금등의 처벌을 할 수 있게 규정하였다.¹⁸⁾ 대외 무역법에 규정된 제재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제재내용

구 분(처분 대상자)	벌칙	과태료	과징금
①원산지를 허위로 표시 ②원산지를 오인하도록 표시 ③정당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이하 벌금 ¹⁹⁾	-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²⁰⁾
원산지표시대상품품에 대해 원산지를 미표시	위와 같음	-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위반	위와 같음	-	-

16) 대외무역법에서 지칭하는 ‘물품등’이란 ① 물품, ②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용역, ③ 대외무역법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을 의미함(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그러나 용역과 전자적형태의 무체물에는 원산지표시와 관련한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 원산지표시문제는 수출입되는 ‘물품’에 국한된다.

17) 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

18)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및 제6항, 동법 제53조의 2와 제55조 내지 제57조

19) 이때 징역과 벌금은 병과(併科)가 가능하며,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구 분(처분 대상자)	벌칙	과태료	과징금
외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원산지가 한국인 것처럼 가장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판매	위와 같음	-	-
법령에 규정된 원산지표시방법을 위반	-	-	수출입신고금액의 10% 또는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을 국내에서 유통할 때 적법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
단속기관에서 서류 등을 검사함에 있어 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	-	위와 같음	-

자료 : 2010년말 현재의 대외무역법령을 정리하여 연구자가 작성

〈표 1〉의 제재와 별개로 해당 물품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요구된다. 시정조치는 수출입신고가 된 것은 보세구역에 장치된 상태에서, 시중에 유통중인 물품은 현장이나 또는 보세구역반입명령²¹⁾을 통해 보세구역에 반입된 다음 요구될 수 있다. 법령에 규정된 원산지표시의 의무 위반과 관련한 조사와 처분은 대외무역법,²²⁾ 형사소송법,²³⁾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의 범위에 관한 법률²⁴⁾ 등에 따라 검사, 사법경찰관리, 그리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이 가운데 단속과 관련하여 주로 활동하는 기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된 세관공무원이 근무하는 세관과 시·도지사 소속 공무원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특별시와 광역시, 도)다. 시중 유통 농수산물로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단속은 대외무역법뿐 아니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산하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별도로 단속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이 단속활동을

20) 과징금은 해당 무역거래자 등의 수출입규모, 위반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할 때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 이내 이어야 한다.

21) 관세법 제238조

22) 대외무역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1조

23) 형사소송법 제197조

24)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한다. 수입상품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나 단순가공, 혹은 제도가공 과정을 거쳐 유통되는데, 원산지표시 위반은 이 과정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위반 물품단속도 주로 수출입통관²⁵⁾과 시중 유통단계에서 이루어진다.

Ⅲ.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및 단속실적

어느 나라에서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수입과 관련해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물품과 환적물품으로 외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허위표시한 것이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하나 전체적으로 보아 그 비중은 낮다. 수입물품 가운데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다만, 수입통관 단계에서 실시된 검사에서 적발된 실적으로 유추할 수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221개의 HS 4단위중 55.2%인 674개를 원산지표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²⁶⁾ 관세청의 통계에 따르면 수입물품중 원산지표시 대상인 물품은 2010년 상반기의 경우 수입신고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87.6%에 해당하였다. 무역규모가 상당한 대부분 국가의 세관은 통관적법성 침해가능성²⁷⁾을 고려하여 위법가능성이 높은 수입물품에 대해서만 관세법 규정에 따라 물품검사를 실시한다. 최근 4년간 통관단계에서 실시된 물품검사와 이러한 물품검사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은 <표 2>와 같았다.

25) 수출입통관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환적되는 물품 중 원산지를 한국으로 허위표시한 물품도 세관의 단속 대상이 된다. 관세법 제231조

26)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별표 8]

27) 여기에서 통관적법성을 침해한다 함은 관세 등 조세의 미납, 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표시 위반, 기타 각종 수입요건의 미충족을 의미한다.

〈표 2〉 통관단계의 물품검사와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 실태²⁸⁾

구 분		2007	2008	2009	2010.1.~8.	평 균
수 입 통 관	신고건수(천건)	6,694	6,476	7,149	6,349	6,667
	신고금액(억원)	3,040,585	4,255,519	3,636,369	2,774,076	3,426,637
	검사비율(%)	4.1	3.4	3.9	3.1	3.6
원산지 위반적 발실적	건 수	11,009	9,569	10,619	6,371	9,392
	신고건수대비(%)	0.16	0.15	0.15	0.10	0.14
	검사건수대비(%)	4.01	4.35	3.81	3.24	3.85
	금 액(백만원)	108,541	107,605	106,262	50,225	93,158
	신고금액대비(%)	0.04	0.03	0.03	0.02	0.03

자료 : 관세청 통계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2〉를 보면 수입통관물품에 대한 세관의 검사비율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다. 수입물품에 대한 물품의 검사는 수입신고건수가 해마다 급증하는 상황에서 극히 일부의, 통관적법성 침해 가능성이 높은 품목에 국한되어 실시²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품목에 따라 검사비율도 달라지는 특성을 보인다. 〈표 2〉에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적발건수와 위반금액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이 나타나는데 이는 무역규모의 증가추세와 관련이 깊은 것이다. 신고건수 대비 적발률은 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최근 3.8년 동안 평균 0.14%로 큰 변화가 없었고, 검사건수 대비 적발률은 평균 3.85%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표 1〉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다른 통계에 의하면 같은 기간 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된 원산지표시 위반의 유형은 미표시가 건수기준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하여 대부분이었고, 부정정표시³⁰⁾가 27.1%로 그 다음이었다. 반면 허위나 오인표시, 손상·변경

28) 신고건수는 수입신고서의 란별 건수를 의미한다. 수입신고는 B/L 단위로 함이 원칙이며, 동일한 B/L로 수입되는 물품이 HS 10단위 품목이 여러 개일 때 수입신고서는 HS 10단위 품목별로 란을 달리하여 작성한다.

29) 정재완, 관세법(무역경영사, 2010), pp.374~376 참조.

30) 부적정한 원산지표시는 원산지표시 대상인 가구에 원산지를 표시하면서 그 바닥에 표시하거나, 표시를 아주 작은 글자로 하여 소비자가 특별히 살펴보지 않으면 알지 못하게

등의 위반은 1% 내외였다. 시중유통단계에서의 수입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단속은 세관장과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가 실시하는데,³¹⁾ 세관장이 행한 최근의 단속실적은 <표 3>과 같았다.

<표 3> 시중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단속실태

(단위 : 건)

구 분	2008			2009			2010.1.~8.			비중 (%)
	KCA	시·도	계	KCA	시·도	계	KCA	시·도	계	
허위표시	126	270	396	182	528	710	129	323	452	19.5
오인표시	51	53	104	100	12	112	54	33	87	3.8
손상변경	70	83	153	80	3	83	61	32	93	4.1
미 표시	363	2,979	3,342	464	107	571	265	732	997	61.6
부 적 정	128	352	480	247	4	251	83	56	139	11.0
총 계	738	3,300	4,038	1,073	133	1,206	592	1,176	1,768	100

주) KCA : 관세청, 비중은 3년 전체에 대한 비중을 의미
 자료 : 관세청 및 무역위원회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3>을 보면 시중유통단계에서 세관장이 행한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단속건수와 금액은 최근 3간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은 감소추세임이 나타난다. 세관당국이 시중 유통단계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에 대해 단속하게 된 것은 2007년 대외무역법령 개정으로 그 권한이 부여된 이후부터로, 그 이후 전국에 산재한 46개 세관이 적극적으로 시중단속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은 주로 농수산물에 집중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공산품의 단속실적은 매년 농수산물의 20% 이하였다. 이는 관세청 단속의 95% 이상이 공산품인 것과 대비된다. 또한 단속한

하거나, 제품의 바탕색과 같이 하여 잘 보이지 않게 하거나,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라벨이나 스티커로 표시한 경우와 같은 것들이다.

31) 농수산물의 경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해 농림수산물부 장관 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나 수산물품질관리원장이 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단속활동을 한다. 이들 기관은 공산품에 대해서는 단속권한이 없다.

원산지위반 형태중 미표시가 대부분인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로 단속한 것이 산물(散物)인 농수산물을 소매시장에서 판매하는 단계에서 풋말 부착 등으로 원산지를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가 그 대상이었을 것³²⁾으로 추정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최근 3년간 단속된 위반형태는 미표시가 61.6%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허위표시 19.5%였다.

IV.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

1. 조사대상 품목 선정

2010년 9월 현재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으로서 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수입 및 국내 시장에서 빈번하게 유통된다고 추정된 시계류(HS 91), 공구류(HS 68, 82, 8466), 안경테(HS 90), 의류((HS 61)의 5개 품목을 선정하여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5개 품목의 최근 4년간(2010년은 1월~8월) 수출입과 국제경쟁력 현황은 <표 4>와 같았다.

<표 4> 5개 조사대상 품목의 최근 4년간 무역현황

		시계류	공구류	안경테	의류
2007	수출	93,972	1,361,630	95,425	1,003,390
	수입	261,106	643,439	65,926	1,266,042
	收支	-167,134	718,192	29,498	-262,651
	TSI ³³⁾	-0.47	0.36	0.18	-0.12
2008	수출	92,771	1,367,600	98,234	906,798
	수입	295,913	651,749	65,667	1,273,124
	收支	-203,162	713,850	32,567	-355,326
	TSI	-0.52	0.35	0.20	-0.16

3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8조제1항제2호에는 “재포장되지 않고 날개 또는 산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물품 또는 판매용기·판매장소에 스티커 부착, 풋말부착 등의 방법으로 수입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시계류	공구류	안경테	의류
2009	수출	69,943	1,174,641	95,056	582,855
	수입	290,692	523,155	50,518	1,022,217
	收支	-220,750	651,486	44,538	-334,826
	TSI	-0.61	0.38	0.31	-0.21
2010. 1.~8.	수출	48,534	897,407	74,145	515,212
	수입	241,550	476,502	37,667	801,049
	收支	-193,066	420,907	36,478	-285,816
	TSI	-0.67	0.31	0.31	-0.22

자료 : <http://www.customs.go.kr> 통계자료로 연구자가 작성

조사는 먼저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4개 품목의 최근 3년간의 수출입 및 국제수지, 그리고 수입시장 구조의 변화 등을 분석하고 4개 품목과 관련된 민간단체를 방문하여 원산지표시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과 심층면담을 실시한 다음, 해당 협회 또는 조합³⁴⁾의 업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표 4>를 보면 시계류와 의류는 우리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공구류와 안경테는 경쟁력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안경테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중 지속적으로 수출특화지수가 증가하고 있다. 경쟁력강화가 추정되는 사실이다. 최근 4년간 조사대상 4개 품목의 수입통관 및 통관단계의 검사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내용은 <표 5>와 같았다.

33) TSI(Trade Specification Index)는 무역특화지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시장에서 양국 간 경쟁력을 분석하는 지표이다. 이는 각 품목의 수출입차이를 해당 품목의 교역규모(수출입총액)로 나눈 값이다. TSI는 -1에서 1사이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수입특화의 정도가 높다는 것을,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수출특화지수가 높을수록 그 나라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강하다는 뜻이다.

34) 해당 협회 또는 조합은 다음과 같다. 시계 :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공구 :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및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안경테 :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가방 및 의류 : 한국의류산업조합

〈표 5〉 5개 품목의 최근 4년간 연평균 통관 및 원산지표시위반 적발실적

구 분		시 계	공 구	안경테	의 류
수 입 통 관	신고건수(천건)	34	59	10	660
	신고금액(백만원)	292,998	646,085	56,435	4,475,928
	검사비율(%)	6.10	5.97	5.40	5.63
원산지 위반적 발실적	건 수	157	301	36	1,043
	신고건수대비(%)	0.48	0.51	0.35	0.17
	검사건수대비(%)	7.95	8.50	6.58	2.85
	금 액(백만원)	909	2,343	272	5,441
	신고금액대비(%)	0.32	0.36	0.45	0.12

자료 : 관세청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5〉를 앞서 〈표 1〉과 비교해 보면 이들 5개 품목의 검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시계, 공구, 안경테 및 가방의 원산지위반 적발실적도 크게 높았다. 그러나 의류의 경우는 검사비율은 더 높았음에도 적발실적은 오히려 낮았다. 한편, 5개 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형태는 다른 일반적인 품목과 별 차이가 없었고, 해당 상품의 국제경쟁력과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적발율과의 상관관계도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2. 설문조사와 그 결과

(1)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표본

설문조사 대상인 모집단은 4개 품목의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정하였다. 이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가운데는 수입을 겸하는 경우도 있고, 수입과 무관한 경우도 있다. 설문조사의 표본은 모집단에서 각 품목과 관련된 협회 회원사로 선정하였다. 품목별 관련협회와 설문조사 모집단 및 표본은 〈표 6〉과 같다.

〈표 6〉 설문조사의 모집단과 표본

조사품목	모집단 추정치 ³⁵⁾ (생산/유통업체 전체)	관련협회	표 본 (관련협회 회원사)
시계류	15,000(생산/유통업체)	시계산업협동조합	208
공구류	500(제조업체)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170
	5,000(유통업체)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300 ³⁶⁾
안경테	1,200(제조/유통업체)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542 ³⁷⁾
의 류	30,000(제조/유통업체)	한국의류산업조합	392

(2) 조사도구-구조화된 설문지와 조사내용

설문지는 분석방향과 내용을 고려하여 4개 품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일한 요소를 설문하도록 하되 법규정과 통계분석, 전문가 면담 조사 등에서 확인된 바에 따라 품목별 특성을 반영하여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품목별 관련협회 전문가 및 업체대표와의 심층면담이 이루어진 다음날부터 1주일간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그 다음 1주일간을 추가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설문지는 1차적으로 관련협회(조합)를 통해 이메일로 회원사에 배포하였고, 배포된 설문지는 이메일 또는 FAX를 통해 회수하였다. 그러나 그 회수율이 상당히 낮은 경우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온라인 조사에 추가하여 조사요원을 투입·조사함으로써 응답률을 높였다. 설문조사 시기 및 설문지의 회수 상황은 〈표 7〉과 같다.³⁸⁾

35) 각 품목의 모집단인 생산업체와 유통업체는 어느 경우나 정확한 집계가 불가능하였고, 관련협회가 통계청의 자료 등을 기초로 추정한 자료이다.

36)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의 회원업체는 3,200개사이나 표본으로 한 것은 300여개 업체였다.

37) 이 가운데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의 회원은 105개사이다.

38) 확인결과 설문에 응한 기업들은 제조업체가 전체의 절반인 50%이고, 제조 및 유통업체가 39.6%, 유통업체가 10.4%로 제조업체의 비중이 높았다.

〈표 7〉 설문조사 실시와 설문지 회수상황

조사품목	관련협회	조사기간	회수 설문지			응답률 (%)
			a	b	계	
시계류	시계산업협동조합	2010.10.13~27	6	25	31	14.9
공구류	한국공구공업협동조합	2010.10.20~29	25	-	78	14.7
	한국산업용재공구상협회	상 동	53			17.7
안경테	한국광학공업협동조합	2010.10.29~11.10	27	20	47	8.7
의 류	한국의류산업협회	2010.11.3~15	73	22	95	24.2
합계(평균)	-	2010.10.13~11.15	184	67	251	16.1

※ a : 관련 협회 또는 조합을 통한 회수, b : 조사요원 직접 조사

(3) 조사결과

설문조사에서 먼저 확인한 것은 응답자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의 수입 유통으로 피해를 본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것으로, 이에 대해 43%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직접 피해를 보았거나 다른 업체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답하였다. 품목별로는 시계가 25.8%가 피해를 인정한 반면 공구류는 60.0%, 의류는 53.2%가 피해를 인정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위반이 어느 시기에 주로 발생하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결과는 응답자들 중 53.4%는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수입통관단계에서부터라 응답한 반면 46.6%는 수입통관단계가 아니라 통관 이후의 유통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다. 원산지표시 위반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허위표시, 미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라는 네 가지 위반형태를 제시하고 주로 발생하는 위반형태를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복수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 응답결과는 〈표 8〉과 같았다.

〈표 8〉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의 형태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 %)

구 분	미표시	허위표시	오인표시	부적정표시	합 계
시계류	38.1	38.1	14.3	9.5	100
공구류	26.2	47.6	17.5	8.7	100
안경테	28.6	50.8	7.9	12.7	100
의 류	34.1	36.4	21.2	8.3	100
평 균	31.75	43.23	15.2	9.8	100.00

자료 : 251개 업체의 설문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8〉을 보면 조사대상 품목 모두 수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형태로 가장 많이 지목된 것은 허위표시이고 다음이 미표시다. 허위표시는 명백하게 범법적 의도를 가지고 원산지를 속이는 것이며, 미표시는 간혹 원산지표시제도를 모르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개 국산품중 상당부분 물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하여 원산지 미표시 수입물품을 소비자가 국산품으로 오인하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오인표시와 부적정표시는 품목에 따라 그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의류에서는 오인표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안경테에서는 부적정표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의 조사내용은 제3장에서 설명한 객관적 통계자료와 차이를 보이는데, 미표시 부분의 경우 통관단계에서 상당수가 시정된 다음 시중으로 유통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그 이유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물품이 어느 정도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체 수입 유통물품 중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차지하는 비율을 추정하도록 한 결과³⁹⁾는 〈표 9〉와 같이 조사되었다.⁴⁰⁾

39) 이러한 추정요청에 대해 응답자들은 정확한 것은 알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따라서 이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도 그만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0) 이 설문조사에서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유통비율은 10% 미만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40.2%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41% 이상이라는 극단적인 응답도 시계류에서 6.3%, 가방 및 의류에서 5.3%가 있었다. [그림 1]의 통계치는 설문응답자들의 응답내용을 가중 평균하는 방법으로 집계한 것이다. 이하 설문조사 결과의 통계치 산정도 마찬가지로

〈표 9〉 수입 유통물품 중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비중

구 분	시계류	공구류	안경테	의류	4품목 평균
위반물품의 비중(%)	12.5	15.3	16.5	19.8	16.0

자료 : 251개 업체의 설문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9〉를 보면 품목에 따라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이 유통되는 비율에 차이가 있으나 평균 16% 정도의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가운데 의류의 경우가 표시위반 물품 유통비율이 가장 높아 약 19.8%에 이르는 것으로, 시계류는 상대적으로 낮아 약 12.5%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유통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물품의 유통으로 해당 물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산업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추정해 보기 위해 ‘원산지를 위반한 00물품의 유통으로 국내 00산업의 생산 또는 매출이 감소되는 규모는 어느 정도의 비율이라 보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이 질문에 대해 각 협회의 전문가 또는 업체 대표들과의 면담인터뷰나 조사요원의 전화인터뷰에서 면담대상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나 개략적인 추정치를 파악하기 위해 이와 같은 설문을 실시하였고, 응답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전화통화를 통해 추가적인 보완작업을 하였다. 응답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유통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구 분	시계류	공구류	안경테	의류	4품목 평균
매출액감소 추정비율(%)	14.2	20.2	19.3	21.3	18.8

자료 : 251개 업체의 설문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10〉을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유통으로 인해 경쟁품목 제조업체의 매출액감소율은 시계가 14.2%로 상대적으로 낮고, 의류는 21.3%로 높다. 4개 품목 평균은 18.8%로 집계되었다.⁴¹⁾ 이와 같은 매출액감소는 곧 해당 산업에 대한 피해규모의 추정치라 볼 수 있다. 이 설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으로 설문응답자의 업태를 제조업체와 유통업체로 구분하여 살펴 본 결과 산업피해에 대해 서로 다른 규모로 추정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예로서 공구류와 의류의 경우를 예로 보면 제조업체 응답자는 전체의 58.4%가 산업피해 규모가 21% 이상이라고 응답한 것에 비해 유통업체 응답자는 29.7%만이 이에 동의하고 있어 제조업체 응답자가 유통업체 응답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피해의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수입물품의 유통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는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당사자, 특히 판매자가 보는 부당이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 00품목의 판매시 판매자의 부당이득은 매출액의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을 하였다. 응답내용을 정리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판매로 판매자가 얻는 부당이득 (판매가 대비)

구 분	시계류	공구류	안경테	의류	4품목 평균
부당이득 비율(%)	29.3	25.1	44.7	39.7	34.7

자료 : 251개 업체의 설문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표 11〉을 보면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판매함으로써 판매자가 가장 많은 부당이득을 얻고 있는 물품은 안경테로 약 4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조사품목 전체의 평균 부당이득률은 34.7%로 추정되었다.⁴²⁾ 이와

41) 이와 같은 피해추정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에 관한 법령에서 무역조정지원기업으로 지정하는 심각한 피해의 수준의 기준을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그 직전 연도 동일 기간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과 비교하여 100분의 25 이상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42) 한국은행이 기업경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제조업)의 2009년 매출액

같이 소비자피해 규모가 높게 추정되는 것은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수입과 유통을 단속하는 주요한 목적이 국내산업 보호뿐 아니라 소비자권익의 보호도 포함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중에 유통중인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거래상황에 대한 설문 결과는 전체 응답자의 78% 정도가 별 변화가 없거나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황에 대한 인식은 품목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유통이력 관리제도가 적용되고 있는 안경테의 경우 75%에 이르는 응답자들이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유통이 줄어들고 있다고 응답하여 긍정적인 시각이 높았다. 반면, 의류의 경우는 43.2%의 응답자들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응답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원산지표시 위반의 문제는 자주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국내적 관심도가 높은 사안이다. 이 제도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불법적인 원산지표시가 국내산업과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 때문이다. 원산지표시에 대한 각국의 입법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비교적 엄격한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는 반면 EU는 허위의 원산지표시만 규제할 뿐 상대적으로 엄격하지 않은 원산지제도를 운영해 왔는데, 이러한 EU가 최근들어 의류에 대한 전면적인 원산지표시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⁴³⁾ 원산지표시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이 연구는 2010년 9월 현재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과 시중유통이 비교적 많다고 추정되는 시계류, 공구류, 안경테, 의류 등 4개 품목에 대해 통계자료 분석과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그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수입통관단계에서 세관이 실시한 물품 검사비율은 평균 3.6%였고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적발실적은 검사건수의

세전순이익률이 4.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할 때 이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43) 연합뉴스, 'EU 의류원산지표시 의무화 추진'(2010.5.19.) 보도 및 주간무역, '유럽의회 역외산 소비재 원산지국 표시의무화 지지'(2010.11.1.) 보도내용 참조.

평균 3.85%였다. 검사가 생략된 수입물품중 상당수가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물품이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정상적으로 수입통관된 물품도 수입통관 이후 단계에서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여 유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를 막론하고 설문조사에서 확인된 바는 4개 조사품목의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유통으로 인해 산업피해가 거래금액의 평균 약 18.8%, 소비자 피해가 평균 약 34.7%로 추정되었다. 물론 이 추정치는 설문에 응한 해당 산업종사자들의 개인적 의견으로, 사실보다 어느 정도 과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점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물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입 통관단계와 국내 유통단계 모두에서 적극적인 단속이 있어야 한다. 특히 통관 단계와 유통단계를 연계하여 관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의 운용과 단속기관의 공조가 중요할 것이다.

이 연구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시중유통과 그로 인한 산업피해 및 소비자피해를 처음으로 실증 분석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개별사례의 제시나 혹은 막연한 주장만 있었을 뿐 전반적인 조사결과가 나온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학문적인 발전이나 법적, 제도적 정책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다. 그러나 산업피해 및 소비자 피해의 조사가 통계자료 및 관련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진 까닭에 피해 규모 추정의 정확성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이는 이 연구의 한계이자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향후 수입물품의 유통현장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를 통해 보다 정확한 피해규모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이는 더욱 유용한 정책개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어떻게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일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 고 문 헌

- 남보라 외 7인, “4개권역 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실태 및 위생상태 표본조사”, 한국축산학회지, 제27권제1호, 2007.
- 남정옥 외 7인, “전자상거래의 축산물원산지 표시실태 및 표시규정 모니터링”, 한국축산학회지, 제27권제1호, 2007.
- 노영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소비자보호원, 2006.
- 문중삼·송민규, “의류제품의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도 도입방안”, 국의류산업학회지, 제1권제3호, 1999.
- 박광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위반관련 벌칙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7권, 2010.8.
- 박광서·오원석, “불공정무역행위로서 원산지표시 위반에 관한 연구”, 무역위원회, 2009.9.
- , “국제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대외무역법 원산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1권, 2009.2.
- 오원석 외 5인, 무역환경변화에 대응한 효과적인 원산지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식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2008.12.
- 오원석 외 4인, 수입공산품의 원산지표시위반 행위로 인한 국내산업피해 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지식경제부 연구용역보고서), 2009.9.
- 이영수·권순국, FTA 원산지규정의 판정사례와 시사점, 무역상무연구, 한국무역상무학회, 제49권, 2011.2.
- 정재완, “국경절차에 대한 가치평가와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6권제3호, 2005.8.
- ,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9권제2호, 2008.5.
- ,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의 시중유통 근절방안”, 관세학회지, 한국관세학회, 제11권제2호, 2010.5.
- , 관세법, 무역경영사, 2010
- 정재완 외 2인, 시중유통 수입물품 원산지표시 단속체계의 효율화 방안, 한남대학교 산학협력단(관세청 연구용역보고서), 2009.12.

한국은행, 2009년 기업경영분석, 2010.7.

Al-sulati, K.I. and Baker, M.J. (1998), "Country of Origin Effects: A Literature Review," *Marketing Intelligence and Planning*, 16 (3)

Gürhan-Canli, Z. and Maheswarfan, D. (1998), "Cultural Variations in Country of Origin Effect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37 (3)

Han, C. M. and Terpstra, V. (1988), "Country-of-Origin Effects for Uni-National and Bi-National Product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20 (Summer)

Javalgi, R.G., Cutler, B.D., and Winans, W.A. (2001), "At Your Service! Does Country of origin Research Apply to Services?" *Journal of Services Marketing*, 15 (7)

Klein, J.G. (2002), "Us versus Them or Us Versus Everyone? Delineating Consumer Aversion to Foreign Goods," *Journal of International Business Studies*, 33 (2)

Liefeld, J.P. (1993), Experiments on Country-of-Origin Effects: Review and Meta-Analysis of Effect Size, in *Product and Country Images*, N. Papadopoulos and L.A. Heslop, eds. Binghamton, NY: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Maheswaran, D. (1994), "Country-of-Origin as a stereotype: Effects of Consumer Expertise and Attribute Strength on Product Evaluation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1 (september)

Nebenzahl, I.D. and Jaffe, E.D. (1993), Estimating Demand Functions from the Country-of-Origin Effect, in *Product-Country Images*, N. Papadopoulos and L.A. Heslop, eds. Binghamton, NY: International Business Press

Obermiller, C. and Spangenberg, E. (1989), Exploring the Effects of Country of Origin Labels: An Information Processing Framework, i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Vol. 16, Thomas Srull, ed. Provo, UT: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 Papadopoulos, N. and Heslop, L.A. (2002), "Country of Origin Effects on Product Branding: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Brand Management*, 9 (4-5)
- Pharr, J.M. (2005), "Synthesizing Country-of Origin Research from the Last Decade: Is the Concept Still Salient in an Era of Global Brands?" *Journal of Marketing Theory and Practice*, 13 (4)

ABSTRACT

A Study on Damage from the Distributed Imports with the Infrac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Chung, Jae Wan

This study re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on the Korean Government's investigation into the imports with the infrac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law, showing how much those imports affect the purchasers as well as the domestic competitors in Korea. According to the HS 4 unit, the range of imports with the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should be 55.2% of all imports, but it turned out there were actually 87.6% of them,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import declarations in the first half year of 2010. The government's investigation on the infrac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is conducted in the stages of customs and distribution into market. As a result of recent 4 years government's investigation into the imports with the infrac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the rate of inspection was averagely 3.6% of the reported number of imports in the stage of customs, the rate of the infraction of the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cases was 0.14% of the total reported number, and 3.85% of the total actually inspected number. The investigation in the stage of distribution was below 20% level of the stage of customs inspection, on the number of caught cases basis. A survey of 4 categorized imports such as Watches, Tools, Glasses frames, and Clothes, which are assumed to happened frequently with the infraction cases, shows that the decreased sales rate of the domestic competitors was averagely 18.8% and the extent of the damage on

consumers was 34.7% of the purchased prices, with both rates resulted from the investigation in the stage of distribution into market.

Key Words : Country of Origin Indication, Imports, Infraction of the C/O